

학교사회복지시범사업의 경과와 향후 전망

이 태 수*

1. 시범사업의 배경

1) 학교사회복지의 정의

학교사회복지는 학교 내 교육-학습의 과정에 장애요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잠재능력을 최대화시키기 위하여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사회복지의 한 실천영역이다(Skidmore, Thackeray & Farley, 1988:178; Winter & Maluccio, 1988:210). 사회복지 전문직의 전반적인 목적이 삶의 질 향상에 있다면, 학교사회복지는 학교의 중심적인 목적 즉, 1) 아동·청소년이 자신감을 갖고, 2) 문제해결, 의사결정 및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3) 자신의 지속적인 학습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학습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학교의 노력에 가담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의 원리와 방법들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문제가 아동의 특징과 학교환경의 조건 및 방침간의 상호교류의 산물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따라서 학교사회복지사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간의 일차적인 연결자와 조정자로 활동하면서 아동과 환경간의 상호교류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게 된다(Allen-Mears, Washington & Welsh, 1986; Freeman, 1994:2088). 이러한 노력은 교육자를 포함한 학교 내 전문가들과 협조적인 팀을 이룬 가운데 이행된다(Winter & Maluccio, 1988).

학교사회복지는 학교를 실천 장소로 하여 학생·가정·학교·지역사회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학생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며,

*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재)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이를 통하여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기능의 한 부분이며 사회복지의 전문분야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사회복지는 학생 개개인의 사회적 기능과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학생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킴은 물론 나아가 모든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학교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복지의 실천방법을 활용하는 전문 영역이다.

2)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전개 과정

학교사회복지사업은 1993년부터 우리나라에 모습을 드러내어 이제 1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사회복지전문영역이 결합됨으로써 학생복지 또는 교육복지의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표 1>에서 최근 10여년에 걸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역사를 정리해 놓았는데, 우선 1990년대는 학교사회복지가 도입된 해로서, 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학과, 교육부, 교육청 등 다채로운 주체들에 의해 다양한 의도와 방법론을 통해 학교사회복지가 도입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둘째로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들어 지방교육청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해 상주형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주목할 정도의 규모로 학교현장에 확대되므로써 확대기라고 명명할 수 있는 상태에 들어섰던 시기이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가 2003년도부터 교육부에 의해 학교사회복지사업이 공식적으로 실시되는 시기인데, 이 중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은 정확히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이라 일원적으로 표현될 수는 없다한다지만, 그 구체 내용에 있어 상당정도 이 사업의 성격을 배태하고 있으므로 이의 언급을 배제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주목되는 사업은 바로 본고에서 소개하려고 하는 교육부의 「교육복지증진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사 활용방안 연구사업」이 되겠다.

이는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채택하여 무려 48개학교에 시범사업성격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학교사회복지 역사상 제도화의 측면에서 가장 고무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시범사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하는 것은 학교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사회복지계 전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을 수 없다.

<표 1>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전개과정

| 시기 구분 | 의의 | 연도 | 실시기관 | 설시학교 | 내용 |
|---------------|---------------------|----------------|---|----------------------|---|
| 학교 사회 복지 사업 기 | 지역사회기반 학교사회복지 시작 | 1993 | 태화은평종합사회복지관 | 수색초 | 수색초와 연계하여 “꿈나무교실” 운영 |
| | 학교상주형 학교 사회복지 시도 | 1993 -1996 | 승실대, 연세대 사회복지 학과 | 화곡여상 / 미동초 / 백석중 등 | 윤철수의 화곡여상 실습(93)을 비롯, 연세대와 승실대의 김기환·노혜련 교수의 학과중심 활동 |
| | 삼성복지재단지원 학교사회복지 사업 | 1995 -2002 | ‘95년 은평복지관 ‘97년 가양복지관등 6개 기관 ‘98년 광주복지관등 9개 기관 ‘00년, ‘01년 실천가협회 지원 | 화곡여상 등 | |
| | 교육부의 1차 시범사업 | 1997년 -98년 | 교육부 | 무학여고 등 4개교 | 상주형이라 보기 어려우며, 인력의 전문성도 보장 않됨 |
| | 서울시교육청 시범사업 | 1997년 | 서울시 교육청 | 광신고 / 영등포여상 / 연북중 | |
| | 학교자체의 상주형 학교사회복지 실현 | 1998 -2003년 | | 영등포여상 / 한가람고등학교 | |
| 학교 사회 복지 확대 기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학교사회복지실현 | 2000 -현재 | 서울시 교육청 | 송파공고등 | 1,2,3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 |
| | | 2002년 -현재 | 과천시 교육청 | 과천과문초등 / 문원중 / 과천중앙고 | |
| | | 2004년 | 강릉시와 평창군관내 초등학교 2곳 | | |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 | 2002 -2004년 | 실천가협회 및 마천종합 사회복지관등 | 안천중학교 등 22개교 | 중앙·공동모금회의 기획 사업으로 시작하여 부산과 대전, 충북지회 등에서도 합세 |
| 제도화 실험기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 2002 -2004 | 교육부 | 공진초 등 45개학교 | 서울 6개지역, 부산 2개 지역에서 2년사업으로 실시 |
| | 교육부 연구사업 | 2004 -2005 | 교육부 | 대구 남동초등 48개학교 | 16개 시군구에 초/중/고등학교별로 각기 1개교씩 실시 |

출처 : 이태수외, 「교육복지 증진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사 활용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4. 10.

3) 사업의 실시 배경 및 경과

교육부에서는 작년 말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2가 개정되는 한편 올해 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이 제정(04. 1. 29)되어 초등, 중등 및 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도록 되었다. 이에 의거하여 교육부는 관련 하위 법령의 제·개정을 준비하는 한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를 위한 내부 계획을 올 상반기에 수립하려 하였다.

그러나 올해 들어 교육부는 신임장관의 의지에 다분히 편승되어 '교육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사회복지의 접합지점에 대해 그 중요성을 새로이 발견하게 되었고, 이런 와중에 평소 학교사회복지사의 필요성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가 일정정도 영향력을 미쳐 교육부는 차제에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만이 아니라 학교사회복지사등 타 전문가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정책을 채택하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교육부는 4월 초순 연구학교사업을 실시키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 ▷ 대상학교 : 16개 광역시·도 교육청마다 초·중·고등학교 1개교씩 3개교, 전국적으로 48개 학교
- ▷ 사업시기 : 2004. 5. 1 - 2005. 4. 30(1년)
- ▷ 사업비 등 지원 : 학교당 2,000만원(인건비 1,500만원 포함), 연구학교 참여 교사당 월 0.021점에 해당하는 연구점수 부여

등의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이에

- ▷ 4월 12(월) - 23(금) : 각 교육청별 연구학교 신청 - 접수 - 선정
- ▷ 4월 24(토) - 27(화) : 학교사회복지학회와 학교사회복지실천가협회 공동으로 각학교에 배치될 학교사회복지사 결정
- ▷ 4월말 : 교육부에 의한 최종 선발
- ▷ 5월초 : 단위학교마다 배정된 학교사회복지사와 계약을 맺고 사업 시작
- ▷ 5월 12(수) : 48개 학교 단체 세미나 실시

등의 과정을 거쳐 매우 빠르게 시행단계에 접어 들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부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그간 학교사회복지학회와

학교사회복지실천가협회가 꾸준히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인적 기반을 닦아 온 데 있으며, 아울러 작년 초부터 학교사회복지제도화 T/F를 구성하여 학교사회복지관련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온 바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또한 교육부의 연구학교사업에 협력하기 위하여 「연구학교사업 추진 T/F」(조홍식, 오창순, 노혜련, 이태수, 김상곤교수등 5인)가 구성되어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사령탑(control tower) 역할을 맡아 온 것도 초기 사업의 실시과정에서 올 수 있는 시행착오를 막고 교육부 및 해당 연구학교가 적절한 사업수행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2. 현황

이리하여 현재 학교사회복지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48개 학교는 다음과 같다.

<표 2> 2004년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연구학교 선정학교 명단

| 시·도 교육청 | 학 교 | 시·도 교육청 | 학 교 | 시·도 교육청 | 학 교 | 시·도 교육청 | 학 교 |
|------------|------------|------------|------------|------------|--------------|------------|------------|
| 서 울 | 초 무학초등학교 | 광 주 | 초 월곡초등학교 | 강 원 | 초 춘천후평초등학교 | 전 남 | 초 장성사창초등학교 |
| | 중 영립중학교 | | 중 천곡중학교 | | 중 원주대성중학교 | | 중 순천남산중학교 |
| | 고 잠실고등학교 | | 고 전남공업고등학교 | | 고 강릉농공고등학교 | | 고 광양실업고등학교 |
| 부 산 | 초 학장초등학교 | 대 전 | 초 산내초등학교 | 충 북 | 초 청주원봉초등학교 | 경 북 | 초 경산하주초등학교 |
| | 중 문현여자중학교 | | 중 회덕중학교 | | 중 청주청운중학교 | | 중 안동중학교 |
| | 고 부산산업학교 | | 고 충남고등학교 | | 고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 | 고 포항장성고등학교 |
| 대 구 | 초 대구남동초등학교 | 울 산 | 초 온남초등학교 | 충 남 | 초 공주봉황초등학교 | 경 남 | 초 양산양주초등학교 |
| | 중 성당중학교 | | 중 효정중학교 | | 중 천안북중학교 | | 중 마산여자중학교 |
| | 고 다사고등학교 | | 고 화암고등학교 | | 고 논산공업고등학교 | | 고 창원명곡고등학교 |
| 인 천 | 초 성리초등학교 | 경 기 | 초 부천도원초등학교 | 전 북 | 초 김제만경초등학교 | 제 주 | 초 남광초등학교 |
| | 중 북인천중학교 | | 중 수지중학교 | | 중 진안여자중학교 | | 중 함덕중학교 |
| | 고 부개고등학교 | | 고 금곡고등학교 | | 고 전주공업고등학교 | | 고 한림공업고등학교 |

3. 평가체계

- 현재로서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로서 의미있게 다루어진 것은 없는 상태임. -

4. 현재까지의 성과와 문제점

1) 현재의 성과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연구학교」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약 5개월이 지났다. 5월3일부터 단위학교에 배치되기 시작한 이후 직무교육과 학교적응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여건조성(기초 욕구조사 및 학교사회복지실 구성 등) 기간과 방학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로 사업을 수행한 기간은 약 3개월에 불과하다. 비록 가시적인 성과들을 얻어내는 데에는 짧은 기간이지만 새로 투입된 사회복지사들과 각 학교의 운영협의체를 중심으로 단기간 내에 학교사회복지실천이 정착되어 가지고 활발한 사업 실적과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사업량이 충분하거나 객관적인 효과의 입증이 어렵기는 하지만 현재까지의 사업실적과 나타나고 있는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사회복지사들이 단위학교에 배치되면서 가장 먼저 요청 받는 활동은 상담활동이다. 상담활동으로 대표되는 개별개입 실적을 보면, 실 인원 3,18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6,108건의 학생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단위학교 당, 66.44명을 대상으로 127.25건의 학생상담을 실시한 것을 알 수 있다. 개별개입 대상자 가운데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로 인해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한 학생 수는 실 인원 288명을 대상으로 947건의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며, 단위학교당 평균 6명을 대상으로 연인원 19.72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였다. 사례관리는 많은 노력과 에너지 그리고 자원이 필요한 개입방법으로 단기간 내에 많은 사례를 발굴하고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사회복지사들은 단위학교에 투입되면서 요청받는 프로그램은 학급이나 소집단을 대상으로 한 집단지도 프로그램이다. 대부분의 경우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해 내고 이를 토대로 집단지도 프로그램 기획하게 된다.

지난 5개월 동안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실시한 집단지도 프로그램은 자아성장프로그램, 진로탐색프로그램, 분노조절프로그램,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 등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였다. 연구 사업에서 설정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노조절프로그램, 왕따 예방 프로그램, 또래관계 증진프로그램, 학급응집력 프로그램 등이 가장 많이 실천되고 있었다.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제공한 집단개입 프로그램 실적을 보면, 실 인원 총 27,906명을 대상으로 연인원 71,966건의 집단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단위학교 당 평균 581.37명을 대상으로 1,499.29명의 학생에게 집단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을 알 수 있다.

개별개입과 집단지도처럼 특별한 욕구를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학교구성원 모두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면서 상호간에 긍정적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이벤트 활동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실적이 훨씬 많다.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실시하는 이벤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생일축하프로그램, 미소 컨테스트, 학교사회복지실을 활용한 쉼터 제공 등 이었으며, 실 인원 46,372명의 학생에게 연인원 70,393명의 학생에게 이벤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학생복지증진을 위한 교사와의 협력적인 활동 추진 실적을 보면, 실 인원, 총 3,698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연인원 6,994명과 협력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단위학교 당 평균 77.04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145.7건의 협력적인 활동을 실시하였다. 협력적인 활동 내용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운영협의회, 교사연수였으며,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교사면담 또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족에 대한 개입의 내용을 보면, 학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부모 상담과 가정방문 그리고 학부모들 대상으로 한 교육과 자원봉사자 교육 등이 주를 이루었다. 서비스 제공 실적으로 보면, 총 7,039명을 대상으로 연 7,774명의 학부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위학교당 평균 146.65명을 대상으로 161.95 건의 학부모 개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보면, 48개 학교의 총 실적은 252건으로 단위학교당 평균 5.25건으로 나타났으며, 단위학교가 지역사회기관과 연계 내지는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건수가 약 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 실적을 볼 때,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연구학교」 시범사업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사업 수행 량이 서울시 교육청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의 사업 수행 량에 크게 뒤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연구학교 서비스 제공 실적

(단위: 명 / 기간: 2004.5월 ~ 9.22 현재)

| 구 분 서비스 내용 | 프로 그램 내용 | 추진 실적 | |
|---------------|------------------|--|---------------|
| | | 실 인원 | 연 인원 |
| 학생 대상 활동 | 개별 상담 | - | 3,189 6,108 |
| | 사례 관리 | - | 288 947 |
| 교사대상 활동 | 집단 지도 | 자아성장 프로그램, 장애체험 교실, 방과후 교실, 진로탐색프로그램, 분노조절프로그램,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 금연프로그램, 학급응집력 프로그램, 심성개발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 캠프 등 | 27,906 71,966 |
| | 이벤트 활동 | 생일축하 공연, 미소 캠페스트, 흡연·약물 남용예방이벤트, 사랑의 우체통, 도미노 게임, 영화상영, 쉼터 제공 등 | 46,372 70,393 |
| 교사대상 활동 | 교사연수 및 면담 | 연구학교 운영협의회, MBTI 검사 및 해석, 교사면담,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연수 등 | 3,698 6,994 |
| 학부모 대상 활동 | 학부모 연수·상담 및 가정방문 | - 학부모 상담, 학부모 연수, 자원봉사자 교육, 가정방문 등 | 7,039 7,774 |
| 지역사회 활동 | 연계 활동 현금 및 현물 | 물품 후원, 도서 후원, 금품 후원, 외부 프로 공모 지원, 지역 연계프로그램 등 | 252 |

* 주 : 위 통계는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연구학교 정책보고서」 작성을 위해 각학교에 요청하여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것임.

2) 문제점

2004년 5월부터 추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복지증진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연구학교사업」으로 48개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로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확대를 위해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사업의 최종적인 성과는 연구학교에서의 결과를 취합한 뒤에 나름대로의 평가 작업을 거쳐 도출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미 90년대 이후 꾸준히 전개되어온 학교사회복지사업의 경과를 통해 볼 때나 외국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리고 학계의 연구를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된 바가 있으므로 그 결과가 특별히 부정적일 것으로 예견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연구학교사업이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확대와 정착을 위해 시범적인 성

격을 띤 사업으로 제대로 수행되기에는 실행방법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음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이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반복된다면 오히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효과조차도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예산부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사업 당 20,000천원의 예산이 배정되어있으나, 이중 학교사회복지사 인건비로 15,000천원이 배정되고 사업비 예산이 5,000천원 배정됨으로써 인건비와 사업비 양쪽에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이 예견된다. 현재 통상 교사의 인건비와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를 생각할 때 연간 총인건비 15,000천원은 양질의 학교사회복지사를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사업비 역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 활동, 학교사회복지실 확보와 운영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공동모금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위학교당 적어도 30,000천원이 확보되어 인건비와 사업비에 적절한 예산이 투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관련자들의 인식 상 혼란 문제가 있다. 교육청의 장학사나 연구관, 단위학교의 학교장 및 연구부장 등 관계자들이 학교사회복지에 대해 생소할 뿐 아니라 각자 인식상의 편차를 갖고 있어 이를 간의 연석회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공유토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환경 및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사업들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시범사업이라 할지라도 단위사업기간이 좀 더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다. 실제 단 1년간의 사업기간에 그 사업의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사업의 초기 정착과정만으로도 1년의 기간이 소비될 수 있다. 이미 서울시 교육청 사업에서도 입증된 바와 같이 1년의 사업기간은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고 만다. 또한 사업개시시점도 학기 중이 아니라 학년 초인 3월이 되어야 하며, 학교의 교육계획안에 포함되어 학교 내 전체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좀 더 절실한 학교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배치하도록 한다. 현재의 연구학교는 선정과정에서 각 교육청의 독자적인 선정기준이 적용되다 보니,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절실히란 기준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사업의 확대과정에는 빈곤지역, 공단지역, 실업계고등학교 등 취약학교 위주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5. 앞으로의 전개 방향에 대한 예측 및 분석

1) 향후 확대의 전망

이 사업은 내년 4월 말로 사업기간이 끝나게 되어 그 시점에서 사업이 중단되느냐 아니면 확대실시되느냐가 드러나게 되어있다.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한다는 것은 난망하지만 최근 교육부의 주요 흐름 두가지를 생각할 때 매우 희망적인 전망을 행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1) 교육복지 5개년 계획 속의 학교사회복지사업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교육복지 5개년 계획을 작성, 공식적인 발표 직전에 있다. 따라서 교육체계 내에서 사회복지사를 활용한다는 것이 이러한 교육복지 계획을 구현함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복지란,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소외, 교육부적응 및 교육 불평등 현상들을 해소하고, 전 국민이 높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누리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개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기함은 물론 나아가 국가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¹⁾ 위한 것으로서 교육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자 복지의 이념과 원리를 도입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탄생한 것이다.

이로써 교육복지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목표를 지니는데, <표>에서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민최저교육수준의 보장, 교육부적응 및 불평등의 해소, 그리고 복지 친화적 교육환경의 조성 등이다. 첫째, 국민최저교육수준의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 병약자, 저소득층 학생, 저학력 성인, 고등교육 소외자, 외국인근로자 자녀 및 기초학력 미달자 등에게 기본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기초학력이 성취되도록 노력한다.

둘째, 교육부적응 및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부적응자 및 학업중단자, 귀국학생, 북한이탈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적절한 예방과 치유, 불평등해소정책을 시행한다.

셋째, 복지 친화적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학교의 비복지적 학교풍토를 구축하고 비교육적이거나 비위생적인 학교 내·외의 환경을 정리하고 취약적인 학생 보건을 행하는 것 등이 핵심이다.

1) 이태수(2004), “교육복지의 기본개념 및 의의, 정책방향”,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p. 1.

<표 4> 교육복지의 목표 및 정책영역

| 목 표 | 정책영역 | 구체적 정책대상 |
|-------------------|--------------------------|--|
| 1.국민최저교육수준 보장 | 모든 국민의 교육기회 보장 및 기초학력 성취 | 장애인 및 병·허약자, 저소득층 학생, 저학력 성인, 고등 교육 소외자, 외국인근로자 자녀, 기초학력 미달자 |
| 2.교육 부적응 및 불평등 해소 | 학교부적응 예방 및 치유 | 학교부적응자 및 학업중단자, 귀국학생, 북한이탈 청소년 |
| |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 | 도시저소득지역 및 농어촌지역, 정보화 격차, 사교육으로 인한 불평등 |
| 3.복지친화적 교육 환경조성 | 밝고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 비복지적 학교풍토, 비교육적·비위생적 학교 내·외 환경, 취약한 학생 보건 |

* 출처 : 이태수(2004), “교육복지의 기본개념 및 의의, 정책방향”,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p. 3.

이러한 교육복지의 개념 및 정책 목표, 구체 대상 등을 생각할 때 학교현장에서의 불평등과 학교부적응 해소, 복지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2) 빈곤아동청소년 종합대책(일명 '희망투자전략') 속의 학교사회복지사업

참여정부는 04. 7. 빈곤아동 및 청소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희망투자전략(希望投資戰略)’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전략에 의하면 빈곤아동과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섯 가지 구체 전략을 실행하는데,

첫째, 기본생활의 보장

둘째, 의료·보건의 보장

셋째, 교육과 보육의 보장

넷째, 위기아동의 보호

다섯째, 희망경로의 제시

여섯째, 종합적인 전달체계의 구축

등이 그것이다.

특히 이중 사회복지사가 교육체계 내에서 이러한 ‘희망투자전략’의 실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행할 수 있는 역할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기본생활 보장의 일환으로 결식아동의 해소를 위해 학교 내의 사회복지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결식아동의 발견과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적어도 우리나라의 아동 중 결식의 고통을 당하는 아동은 완전 해소한다는 목표를 염두에 둘 때, 이는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교육청의 업무 협조가 절대적이며 또한 지역사회내의 사회복지기관과 학교와의 연계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때 학교 내에서 결식가능아동을 발견하고 지역사회내의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내에서의 급식 제공만이 아니라 학교를 벗어나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나 방학 중 지역사회내의 복지기관과 밀접히 연결하여 그 결식대상 아동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를 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학교사회복지사가 담당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좀 더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현재의 교내 상담체계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강조된다. 현재 학교 내의 상담기능은 교사 중 상담교사 업무를 병행하는 형태로 되든지, 아니면 시간제 상담교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심각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의해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기도 예정되어있으나, 현재 우리사회내의 청소년들의 문제가교사와 상담전문가에 의해서만 수행되기에 매우 복합적이고 심충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내에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그 기여도가 인정받은 전문가들의 역할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때 사회복지사가 학교 현장에서 상담체계의 혁신에 부응하며 그 전문성을 발휘하여 문제해결에 조력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유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희망투자전략'에서는 2004년 학교사회복지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05년부터 사업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2) 향후 제도화를 위한 고려점²⁾

학교사회복지제도가 향후 제도화를 통해 실행되기 위하여는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문자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둘째, 학교사회복지사가 활동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셋째,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체계안에서 어떻게 활동하며, 여타 직종과 어떠한 역할분담을 수행할 것인가?

넷째, 학교사회복지사는 어느정도로 최종적인 확산 전망을 지니고 나아갈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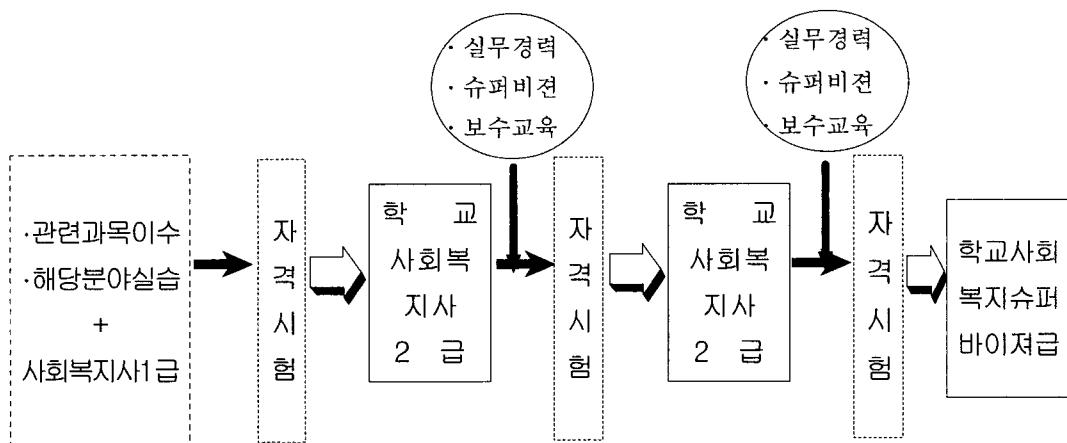
2) 아래의 내용은 학교사회복지제도화 T/F에서 논의하고 검토해 온 사항을 토대로 필자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으로서 학교사회복지제도화 T/F의 공식화된 견해는 아님을 밝혀둔다.

이에 대해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해 본다.

(1)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제도 구축

학교사회복지에 있어서 학교라는 실천현장은 교육이 1차적 목적이고 사회복지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2차적 목적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2차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동료들 간의 집단 의사결정체계 대신 사회복지사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학교현장에서 수행해야하는 업무의 난이도가 높고 현장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로서 일반적인 자질을 학교현장에 단순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 따라서 학교사회복지사로서의 자격을 위해서는 확고한 정체성을 비롯하여 학교현장에서 선도적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이들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사회복지사는 2급과 1급, 그리고 슈퍼바지이저급 자격 등 3개로 구분하고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지닌 상태에서 학교사회복지현장에서의 실무경력이나 대학원에서의 전공경력, 그리고 소정의 관련 전문교육을 통한 교육평점 등을 겸비하고 최종적으로는 엄격한 자격시험을 거친 자로 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자격부여 과정을 그려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학교사회복지사 자격부여 과정

① 학교사회복지사 2급 자격

학교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위한 기초 조건은

- 학사학위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 학부과정에서 학교사회복지관련 교과목과 학교사회복지실습 이수등 이다.

이때 학교사회복지 관련교과목이란,

- 학교사회복지론
- 아동복지론
- 청소년복지론
- 교육학

등을 말한다.

이러한 기초조건을 구비한 자가 소정의 자격시험을 거쳐 통과하면 학교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이 자격을 구비한 자는 학교사회복지사로서의 기본적인 전문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② 학교사회복지사 1급 자격

학교사회복지사 2급 자격이 기본적인 자격에 대한 인정이라면 실질적인 업무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원숙한 학교사회복지업무의 수행 능력을 인정하는 학교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다음단계의 자격과정으로 존재한다.

이를 위한 기초조건으로는,

- 학교사회복지사 2급 자격
- 3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사 실무경험
- 연간 24시간, 총 72시간에 걸친 슈퍼비전 과정 이행
- 연간 3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등이다. 이들 기초 조건을 구비한 자가 소정의 자격시험을 거쳐 통과하면 학교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③ 학교사회복지 슈퍼바이저 자격

학교사회복지 슈퍼바이저 자격은 학교사회복지사를 교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자격으로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배출을 위해 필요한 자격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서는,

- 학교사회복지사 1급 자격
- 5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사 실무경력
- 연간 24시간, 총 120시간의 슈퍼비전 취득

- 연간 30시간 이상의 슈퍼바이저 양성 보수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충족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을 거쳐 통과하면 되도록 한다.

<표 5>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련 규정안

| 등급 | 자격 기준 |
|--------|--|
| 2급 | ① 학사학위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② 학교사회복지관련 교과목들을 이수하고 ③ 1학기 이상의 학기 중 학교교사회복지실습을 이수한 자 |
| 1급 | ① 학교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 후 ② 3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사 실무경험과 ③ 총 72시간 이상의 수퍼비전을 취득하고 ④ 연간 3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 수퍼바이저급 | ① 학교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② 5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사 실무경험과 ③ 120시간 (24시간/1년x5년)의 수퍼비전을 취득하고 ④ 연간 30시간 이상의 수퍼바이저 양성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2) 학교사회복지사 활동 근거의 마련

학교사회복지사가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의 「초·중등교육법」에 사회복지사가 활동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 이 법 제19조의 2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문상담교사를 일선학교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6> 「초·중등교육법」 전문상담교사 학교 배치규정

제19조의2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 제1항의 순회교사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때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는

▷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1. 정교사(2급) 또는 보건교사(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2. 전문상담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학교사회복지사가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교사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병행하기 어려울 뿐더러, 오히려 학교 내에 교사자격으로 위상을 점하는 것보다는 교사에 대한 조력자이자 교육복지 또는 학교복지의 전문가로서 수업이나 교과지도와는 관계없는 위치를 점하는 것이 학교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사회복지사는 전문상담교사와는 구분되는 전문가이면서도 학교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 위상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19조 2의 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수 있다.

<표 7> 「초·중등교육법」 제19조 2의 조문 개정안

| 개정 전 | 개정 후 |
|---|---|
| 제19조의 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교육공무원법 제 2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시·도 교육행정 기관에 둔다. | 제19조의 2(전문상담교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 등)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를 두거나 교육공무원법 제 2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 순회교사 또는 순회학교사회복지사를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둔다. |
| ②제 1항의 순회교사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 ②제 1항의 순회교사 및 순회학교사회복지사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

아니면 별도의 조문을 만들어 아예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를 명문화할 수 있다.

<표 8> 「초·중등교육법」 내 학교사회복지사 별도조문 안

| 개정 전 | 개정 후 |
|------|--|
| (신설) | <p>제**조의 1(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 학교 내의 학생복지 증진 및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사회복지사를 둔다.</p> |

이 경우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에는 명료한 근거를 확보하는 장점은 있으나, 현행 학교인력의 대부분이 교사자격을 전제하고 있고, 교사신분이 아닌 경우 행정직원과 같이 분류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칫 학교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지니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의 행정체계를 바꾸어 '교육복지부' 또는 '학생복지부' 정도가 신설되어 학생에 대한 교과외의 지원과 상담을 행하는 인력들을 별도로 편제하는 방안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칭 「학교사회복지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다. 이 법은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부합되는 전달체계 및 사업내용,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등등에 대해 자세한 규정을 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이 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시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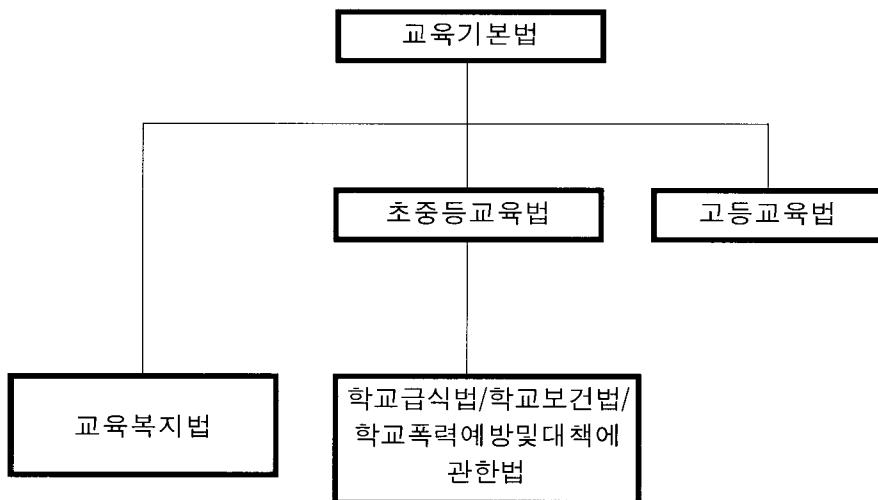
- ▷ 학생에 대한 복지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
- ▷ 교직원과 학부모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 광역 및 해당 지역별로 학생복지지원위원회를 구축하고, 시·군·구에는 학생복지실천을 위해 '학생복지실천위원회'를 둠.
- ▷ 초·중등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되, 학교 내에 학교사회복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단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함.
- ▷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들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학생, 교원, 학부모에 대하여 개입권과 조정권을 가짐.
- ▷ 교사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업무에 협조해야 하며, 학생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짐.

그렇지만 이러한 단독법이 제정되기에는 아직 학교사회복지사업과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난점이 예상된다.

셋째, 교육부의 교육복지정책을 뒷받침하는 가칭 「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하는 가운데 학교사회복지사를 교육복지의 전문 인력 가운데 하나로 인정하는 방안이 있다. 특히 현재 교육복지5개년 계획 확정 및 교육인적자원부내 교육복지정책 심의관, 교육복지정책과의 신설에 따른 관련법규로서 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된다. 만일 교육복지기본법이 마련된다면, 이 법안에는

- ▷ 교육복지의 이념 및 목적
- ▷ 교육복지의 전달체계(중앙부처 및 지방교육청, 단위학교 등)
- ▷ 교육복지의 내용
- ▷ 교육복지의 재원조달
- ▷ 교육복지를 담당할 전문 인력

등이 규정될 것인 바, 이렇게 될 때 현재 「교육기본법」을 위시하여 아래 <그림 2>와 같이 법체계가 정리된다.



<그림 2> 교육복지관련 법체계

이런 가운데 「교육복지법」 내에서 교육복지전담인력을 '교육복지사'라고 칭하고 그 자격기준에 학교사회복지사를 유일한 자격 또는 여러 자격 중 하나로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 가능한 안이 될 것이다. 이 방안은 교육복지체계 내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위상을 확보한다는 것과 함께 교육현장 및 교육정책과의 유기성을 원

활히 확보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때는 학교사회복지사가 여러 전문직 종, 예를 들어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등과 함께 선택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된다.

(3) 학교사회복지사와 여타 전문직종간의 정체성 정립

학교 교육에 있어 가장 전문적이며 핵심적인 전문 인력이 교사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이는 아무도 없다. 교사는 전통적으로 학생들에게는 지식의 전수자로서 뿐만 아니라 인격의 사표(師表)로서 인식되어왔다. 따라서 학생들이 직면한 학습 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 생활 전반에 걸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학생 각자의 생활 전반에 걸친 상담자이자 조력자, 나아가 해결자로서의 역할이 수행되어왔고 아직까지 그러한 역할이 계속 기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개인적 문제들 및 그들 부모를 포함한 가족문제, 그리고 지역사회에 얹힌 문제 나아가 사회구조 자체에 연유되어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 교사라는 전문가의 대응능력은 점차 위축되어왔다. 가출문제, 성매매문제, 집단폭력문제, 왕따 문제, 자살문제,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교사들이 문제의 해결이나 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교육체계 자체가 입시위주의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며,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의 지위와 역할이 축소되는 한편, 학교 내 교사의 배치 및 업무 체계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력을 갖추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진행되어왔다.

따라서 이제는 교사들에 대한 학생지도를 위한 직접적인 여건 개선을 꾀함과 함께,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활용이 요구된다. 이는 학교 내의 교사들의 지위를 약화시키거나 교권을 침해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교사들의 부담을 완화하여 교사들의 학생지도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제고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학교의 교육체계 내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는 매우 다양한 영역에 있어 활동할 수 있다. 즉, 학생문제에 대한 개입으로는 개별상담 및 집단지도, 사례관리,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연결 등을 행할 수 있고, 학부모에 대한 개입으로 학생과 학교와의 매개, 가정방문, 학부모 상담 및 교육, 그리고 각종 복지급여의 제공 또는 연결,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연결 등을 행할 수 있다. 또한 교사에 대한 개입의 역할로서 각종 학생문제 해결에 대한 자문, 학생 또는 학부모아의 매개 등이 있고, 전체학생에 대한 개입의 역할로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도덕성 교육, 각종 예방 교육 및 복지관련 교육 등이 있다. 또한 기타 동아리

지도, 문화체험, 학교행사 기획 및 진행,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C.A. 활동지도 및 관리, 그리고 쉼터 등 휴식공간의 운영 등이 사회복지사의 역할로 행해 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물론 학교사회복지사의 독자적인 역할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연히 교사는 물론 전문상담교사나 기타 전문가집단과의 공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들이 포함되어 있다.

<표 9> 학교사회복지사의 주요업무와 그 특성

| 영 역 | 학교사회복지사의 업무 | 타전문직종과의 공유 | |
|-----------------|-----------------------------|------------|------------|
| | | 공유여부 | 타전문직종 |
| 학생문제에 대한 직접적 개입 | 사례관리 | | |
| |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연결 | | |
| | 급식 등 직접적 서비스 제공 | ○ | 교사 |
| |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진로지도, 학업지도) | ○ | 교사, 전문상담교사 |
| 학부모에 대한 개입 | 학생 또는 학교와의 매개 | | |
| | 복지서비스 연결 | | |
| |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연결 | | |
| | 학부모 상담 및 교육 | ○ | 교사, 전문상담교사 |
| | 가정방문 | ○ | 교사 |
| 교사에 대한 개입 | 자문 | | |
| | 학생 또는 학부모와의 매개 | | |
| 학교차원의 개입 | 위기 개입 | ○ | 전문상담교사 |
| | 학교폭력대처 및 예방팀 | ○ | 전문상담교사 |
| | 학교징계위원회 | ○ | 교사 |
| 전체학생대상 개입 | 자원봉사활동 | | |
| | 도덕성교육 | ○ | 교사 |
| | 예방교육 | | |
| | 복지교육 | | |
| 기타 활동 | 동아리지도 | ○ | 교사 |
| | 문화체험 | ○ | 문화분야전문가 |
| | 학교행사 기획 및 진행 | ○ | 기획분야전문가 |
| | 신입생오리엔테이션 | ○ | 교사 |
| | CA활동 지도 및 관리 | ○ | 교사 |
| | 휴식공간, 쉼터 운영 | ○ | 전문상담교사 |

* 출처: 홍순혜(2004:85) 부분 수정.

이러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전문상담교사와 보건교사와 다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학교사회복지사·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의 역할구분

| 구분 항목 | ① 학교사회복지사 | ② 전문상담교사 | ③ 보건교사 |
|----------|--|--|---|
| 자격 | 미정 | 상담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교사자격취득 | 간호사로서 교사자격 취득 |
| 개입초점 | 교육복지와 학생복지 전반의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 학업지향적 상담에 초점을 맞춘 교육서비스 | 학생 개개인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보건서비스 |
| 공유업무 | 학생복지 관련 · 개별상담 · 집단지도 · 가족상담 | 학업 및 진로 관련 · 개별상담 · 집단상담 · 가족상담 | 학생 정신건강 관련 · 개별상담 · 집단상담 · 가족상담 |
| 독자업무 | · 사례관리 · 가정-학교-지역사회와의 연계 · 인적·물적 자원개발 · 가정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 교사와의 협력적 활동 · 정책 결정지원과 행정 · 교육활동지원 · 안전하고 돌보는(safe & caring) 학교문화·환경 조성 활동 · 전문 활동 | · 진로지도 · 학습 스트레스 다루기 · 심리검사 및 해석 | · 학교 내 학생의 건강증진 및 예방업무 · 보건교육 · 성교육 |
| 우선배치 학교 | 빈곤지역 / 공단밀집지역 / 실업계고교 | 중산층 지역의 일반적 학교 | 입시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상 취약한 학생들이 많은 고등학교 |
| 운영방법 | · 1안(3개의 학생복지전문가 팀으로 운영): 학교사회복지사+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 · 2안(보건교사와 학생복지전문가팀으로 운영): 보건교사+학교사회복지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 3안(선택적으로 단일전문가 배치): 학교사회복지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중 학교특성에 맞게 단일전문가 배치 | | |

(4)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 목표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는 모두 10,424개로서 이 중 빈곤지역밀집 학교를 전체의 5%로 추정한다 할 때 적어도 520개 학교 정도가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주요 대상학교가 될 것이다. 여기에 실업계 고등학교의 절반 정도인 370개 학교를 추가하면 대략 900개 학교를 대상학교로 할 수 있다.

<표 11> 2003년 현재 학교 수

| 학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 계 |
|----|-------|-------|------|-------|--------|
| | | | 실업계 | 비실업계 | |
| 개수 | 5,464 | 2,865 | 734 | 1,361 | 10,424 |

따라서 현재의 48개 연구학교사업은 중장기적으로 9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일단 48개 학교를 추가로 선정하여 96개 사업으로 늘린 뒤, 매년 100여개 학교를 추가해 나간다면 약 10년간에 걸쳐 목적 치에 다다를 수 있는 사업이다.

이때 한 학교당 평균 30,000천원을 투여한다고 했을 때, 내년 96개교를 위해서는 2,880백만 원이 필요하며 이후 해마다 100개교씩 확대한다 할 때 3,000백만 원씩이 추가되어 900여개교로 확대한 시점에서는 27,000백만 원이 소요된다.

그리나 이러한 재원의 투여를 통해 전체 학생의 10%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사회복지혜택을 부여하여 아동·청소년기의 각종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든다면 엄청난 편익을 확보하는 것이 될 것이다.